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대한 고찰

김희수 (백석대학교 교수 / 기독교윤리학)

- I. 서론
- II. 대리모의 개념정의
- III. 대리모출산에 대한 국민의식과 현황
- IV.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
 - 1. 관련법규의 부재
 - 2. 친권자 판정
 - 3. 혈연·가족체계 파괴와 반인륜적 가족관계 형성 가능성
 - 4. 금전거래를 통한 부모 자식의 관계형성
 - 5. 대리모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 6. 빈곤층 및 약소국 여성 착취
 - 7. 잉여배아 파괴
 - 8. 배아실험 및 조작
- V. 결론

• **ABSTRACT** •

There is no law or legal guidelines about surrogacy in Korea. Peoples' opinions on surrogacy are mixed. According to statistics, about 80% of the Koreans in Korea are against it, but still about 20% of the Korean population are in favor of it. This 20% of Koreans say that they would choose surrogacy in order to ensure they have a baby who inherits their own genes if they were otherwise incapable of pregnancy. About 43,000 babies were born through surrogacy in Korea in 2005. But there are so many ethical and legal issues related to surrogacy. Examples of these issues include the difficulty of judging parental rights, the danger of the destruction of kinship structure, exploitation of the right of the surrogate mother, acquisition of babies by way of monetary dealing, colonialization of the womb, production and destruction of embryos, eugenic tests of the embryos, and the production of designed babies. This article will focuss on analysing these issues and suggest ways to solve these problems.

Keywords: surrogacy, exploitation, destruction of kinship structure, colonialization of womb, destruction of embryos, eugenic test, designed babies

I. 서론

대리모 출산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관련된 문제들은 무엇인가? 과학적 실험은 무조건 금지해야 하는가? 한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세계 어느 문화권이나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자녀를 출산하여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결혼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 한국에서는 부인이 자녀, 특히 이들을 출산하지 못하면,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 씨받이(대리모)를 들이곤 했다. 오늘날에도 한국사회에는 대리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 없이 찬반 양론만 무성한 가운데 전통적인 개념의 씨받이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대리모출산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를 갖고 싶으나 신체적인 요인으로 인해 임신을 할 수 없는 부부들의 경우에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부들의 행복추구권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 그러나 대리모 출산에는 복합적인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다. 친권자 판정, 혈연 및 가족계보 파괴, 금전적 거래에 의한 아이획득, 대리모 여성의 인권유린,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에 의거한 자궁의 식민지화, 잉여배아 파괴문제, 아이의 행복보다는 부모의 욕구충족을 위한 우생학적 실험과 맞춤형 아이 생산 등과 같은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대리모 출산과 연관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상과 같은 주제들에 대해서 고찰하고 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들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II. 대리모의 개념정의

대리모는 “부인의 자궁에 이상이 있는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는 것을 돕기 위해 그 부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자궁으로 태아를 양육하는 여성”을 의미한다.¹⁾ 이외에도 불임부부를 위해 조력된 임신에 의해 포태된 아이를 출산하기로 약정한 성년에 이른 여성²⁾, 출생한 자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정자로 수정한 후 임신 및 출산한 여성³⁾ 등으로 정의한 사람들도 있다.

대리모의 유형은 불임의 유형과 정자, 난자, 자궁의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부인의 자궁이상으로 인해 불임인 경우 남편의 정자와 처의 난자를 체외수정 후 제3의 대리모여성의 자궁에 이식해 출산하는 방법(출산대리모 또는 자궁대리모: Gestational Surrogacy), 부인의 자궁과 난자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경우 남편의 정자와 대리모가 될 여성의 난자를 체외수정 후 난자를 제공한 그 대리모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여 출산하는 방법(유전적대리모: Genetic Surrogacy), 이 둘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들이며 그 중에서도 현재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자궁대리모이다⁴⁾. 이외에도, 제3자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체외수정하여 난자 제공자가 아닌 제3의 대리모에게 출산시키는 경우, 제3자의 정자와 부인의 난자를 체외수정하여 제3의 대리모에게 출산시키는 경우, 정자와 난자

1)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제56조 제1항. 2001. 4. 19. 제정, 2001. 11. 15. 공포.

2) Uniform Status of Children of Assisted Conception Act(1988) Section 1(4).

3) 박동진, 「대리모계약에 의한 출산과 그 법적 문제」, 『의료법학』 제3권 제1호, 대한 의료법학회, 2002, p. 58.

4) 출생대리모 또는 자궁대리모는 출생한 아이와 대리모 사이에 유전적 관계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완전대리모라고도 한다. 고정명, 신관철, 「대리모계약의 모성추정에 관한 고찰」, 『국민대 법학논총』, 제10집, 1998, p. 11; 최준·신중승·박원일·이진용, 「선천성 질결여증 환자에서 대리모를 이용한 체외수정 임신 1예」, 『대한산부회지』, 제47권 제11호, 2004, p. 2265.

를 모두 제3자에게서 채취하여 채외수정한 후 난자를 제공한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여 출산시키는 경우, 정자와 난자를 모두 제3자에게서 채취하여 채외수정한 후 또 다른 제3의 대리모에게 출산시키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Ⅲ. 대리모출산에 대한 국민의식과 현황

한림대학교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대리모 관련 문제의 고찰 및 입법 정책 방안 모색’이란 대리모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0% 이상이 대리모 출산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금전적 대리모에 대해 응답자의 83.4%가, 비(非) 금전적 대리모의 경우도 83.3%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의견은 대도시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⁵⁾

대리모출산에 대한 제종교의 일반적 입장은 반대이다. 기독교는 대리모 출산이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적인 출산 방법과 과정에 의해서가 아닌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다는 점, 이 과정에서 수정란 또는 배아에 대한 각종 비윤리적 실험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 대리모 출산 과정에서 비록 육체적인 성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여성을 씨받이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사실상 깨뜨리게 된다는 점, 혈연 및 가족계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해 대리모 출산을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5) “대리모 문제 법으로 풀리나”, 여성신문 848호 게재, 2005년 10월 10일자, 11:54 © 2006 OhmyNews.

교황청은 신앙교리성에서 1987년에 반포한 훈령 <생명의 선물>(Donum vitae)을 통해 출산은 혼인한 부부의 정상적인 부부행위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히고 인위적 조작에 의한 체외수정과 배아의 자궁내 이식을 통한 출산은 배우자 사이의 경우이든 비배우자사이의 경우(대리모 포함)이든 모두 비윤리적인 것으로 보고 금지한다.⁶⁾

더 나아가 본 훈령은 대리모 출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대리모는 모성적 사랑의 의무와 부부간의 정질, 그리고 책임 있는 모성으로서의 의무를 객관적으로 다하지 못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아이가 자기 어머니 자궁 속에서 임신되고 발달되며 바로 그 부모에 의해 세상에 나와 성장되어야 하는 권리와 아이들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인 동시에 가정에도 피해를 주어 가족의 기본 구성 단위인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도덕적 요소의 분열을 초래하기도 한다.⁷⁾

불교 역시 대리모 출산을 반대한다. 불교는 생명 그 자체를 ‘잠재적 부처’ 또는 ‘본래의 부처’로 본다. 그러므로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비록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순수한 동기의 대리모 출산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여 생명을 경시하는 가치관을 만연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리모 출산을 반대한다.⁸⁾

한편 여성계는 “현대 과학을 빌린 대리모 출산은 혈통 위주의 가족 관

6) 교황청 신앙교리성, <생명의 선물>, 1987년 2월 22일. 이 훈령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의 사목 112호(1987년 7월) pp. 119-144에 <인간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전문이 실려 있음. 본 논문에서는 위 번역문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은 파일의 쪽수로 표기한다. pp. 13-14.

7)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인간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p. 14.

8) <http://www.buddhism.or.kr/board/freeboard/board.asp>

념을 반영하는 것이며 대리모의 자궁을 돈으로 사는 반인권적 행위'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다.⁹⁾

이와는 반대로 대리모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들은 대리모출산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1년 11월 15일에 발표된 의사윤리지침 제55조 1항은 “인공수정 등 법률로 허용된 방법으로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도록 돕는 행위는 허용된다. 단, 배우자 사이 이외의 인공수정은 장려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에서 “인공수정 등 법률로 허용된 방법으로 불임부부가 자녀를 갖도록 돕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한 것은 일단 순기능적인 의미의 인공수정은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배우자 사이 이외의 인공수정은 장려되지 않는다”고 한 대목은 대리모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 말은 장려하지는 않지만 엄격하게 금지하지도 않는다는 말이 되므로 결국 대리모출산을 인정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지침 제56조 2항은 “금전적 거래 목적의 대리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말도 금전적 거래가 없는 친족간의 대리모 관계 등은 허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출산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나 한국내에 돈을 받고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대리출산과 난자 매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0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발표한 ‘대리모 및 난자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상업적 대리출산이 지난해 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9월 당시 모 포털사이트에는 대리출산을 알선하는 카페가 4개가 존재했으나 올해 9월 조사에서는 12개로 오히려 늘어났다. 카페

9) “대리모 문제 법으로 풀리나”, 여성신문.

회원 수는 2,300여명에 달한 가운데 대리모를 원하는 광고와 대리모 모집 광고가 각각 50건과 15건이 게재돼 있었다. 심지어 일본사람들이 법규가 허술한 한국으로 원정을 와서 난자를 적출하고 대리모를 구하는 사례가 빈발해 ‘자궁 식민지화’ 우려까지 낳고 있다.¹⁰⁾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소속 의사 13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의사들의 67.5%는 ‘현재 신생아 출산의 10% 이상이 대리모를 통한 것’이라고 답했다.¹¹⁾ 이 자료와 통계청의 신생아 출산 수를 종합하여 계산하면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계산해낼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이 2005년 1월부터 2006년 2월 말까지의 출산 신고자료를 기초로 추정한 통계에 의하면 2005년 출생아수는 43만 8천명이었다.¹²⁾ 결국 2005년 전체 출생아 중의 10%인 43,800여명이 대리모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리모를 통한 부모들’이라는 비영리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1년에 1천여 명에 이르는 아이들 대리모 출산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¹³⁾ 남한의 인구는 2006년 7월 현재 인구 미국의 2006년 11월 12일 14:30분 현재 인구가 300,188,160명으로 남한인구(2006년 7월 현재 약 48,826,823명)의 6배이다. 미국과 남한의 총인구수를 비교한다면 남한에서는 현재 미국의 258배에 달하는 대리모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10) 머니투데이, 2006년 10월 16일자.

11) 서울신문, 2005년 11월 14일자.

12) 통계청,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2006년 5월 8일.

13) “美 게이커플 대리모 ‘성업’” 서울=연합뉴스 2005년 5월 27일자.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505/h2005052720515022470.htm>.

IV. 대리모 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

그렇다면 대리모 출산에는 어떤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관련법규의 부재

외국의 경우에도 대리모출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찬성이든 반대이든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대리모 관련 법적 입장

국 가	대리모 계약에 대한 입장
미 국	각 주에 따라 다르나 10개 주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대리모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플로리다 등 일부 주의 경우 사전에 계획된 양자의 체결'을 전제로 인정하지만 뉴햄프셔와 같이 법원의 사전 승인에 의해서 합법화하는 주도 있다.
영 국	1985년 대리모 계약법을 통해 대리모 계약을 인정하였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대리 출산은 금지하였다. 상업적 목적으로 시술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하나, 사적 비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리모와 의뢰한 부부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호 주	비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주가 일부 존재한다
대 반	대리모 계약을 인정하되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법원의 엄격한 공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캐 나 다	대리모를 공식적으로 등록시켜 정부가 대리모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암묵적으로 대리모 시술이 진행될 배아에 대해 대리모를 합법화시켜 보호하고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이스라엘	일정한 요건 하의 대리모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독 일	금지 - 대리모에 의한 인공수정이나 배아의 이식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프 랑 스	금지 - 프랑스에서 출산 후 아이 인도를 거부한 여성 대리모 위 모권을 주장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리모에게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유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 본	금지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법에는 대리모 계약 자체의 유효성 여부나 대리모 계약을 통해 출생한 아이의 법적 지위문제 등 대리모를 통한 출산과 관련하여 파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정자나 난자의 제공 등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 법률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3조 3항)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그것을 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동법 제51조),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동법 제52조)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조항들은 수정과정에서 의뢰인 부부가 아닌 제3자의 정자나 난자가 사용되는 것은 금지할 수는 있으나 의뢰인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한 후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는 출산대리모(gestational surrogacy)의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2. 친권자 판정

우리나라 가족법에는 대리모에게서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의뢰인 부부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없다. 우리나라는 가족법에 “모권은 출산 여성에게 있다”고 하여 아이의 친권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권리를 출산한 여성에 두고 있으므로 대리모가 아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뢰인 부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아이를 입양해야 한다. 따라서 대리모가 출산 이전에 의뢰인 부부와 계약을 맺었더라도 출산 후에 모성애를 비롯한 기타 이유로 아이를 양도하기를 거부하고 친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대리모 출산에 의해 태어난 아이에 대한 국내법적 처리과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는 우선 (정자나 난자가 누구로부터 연유하는가를 불문하고 민법 제844조에 따라서 대리모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된다. 다만 대리모 부가 친생자로 추정 받는 아이에 대하여 대리모를 통한 임신을 이유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하면 아이는 의뢰부(대리모에게 대리 임신을 의뢰한 夫)의 혼인 외의 아이(혼인 관계인 부(婦) 사이에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된다. 그리고 대리모가 미혼인 경우에는 대리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의뢰부(혹은 정자제공자)의 혼인 외의 아이가 된다.

민법 제855조 1항에 따르면 대리모의 부(夫)가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아이에 대한 친생을 부인하여 아이가 의뢰부의 혼인 외의 자로 된 때에는 의뢰부는 자를 인지할 수 있다. 인지에 의하여 의뢰부가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의 법적 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뢰모에 대하여는 단지 적모서자관계(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父)의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성립할 뿐이고, 법정모자관계가 생기지 아니한다.

결국 의뢰부부가 대리모에 의하여 태어난 자에 대한 완전한 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909조 5항에 근거하여 아이를 입양하여야 한다.

의뢰인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수정하여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출산하는 전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자나 난자의 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친권자 판정은 더욱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3. 혈연·가족체계 파괴와 반인륜적 가족관계 형성 가능성

정자 제공자가 의뢰인 남편이 아닌 친족 중의 1인(시동생, 시아버지 등)이거나 의뢰모의 친족 중 1인(여동생, 어머니 등)이 대리모가 되었을

경우 심각한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 반인륜적 가족관계가 생겨날 수 있으며, 대리모가 아이의 친권을 주장하게 되거나 지나친 연대감을 표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가정이 해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2006년 10월 15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나가노현 시모스와마치의 스와산부인과는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았던 30대 여성 부부가 50대의 친정 어머니를 통해 아기를 낳았다고 밝혔다. 2004년 이 여성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체외수정시킨 뒤 수정란을 그 어머니의 자궁에 이식해, 지난해 봄 출산에 성공했다. 이 아기는 그 어머니의 자녀로 호적에 올린 뒤, 딸 부부의 양자로 삼았다. 이 병원에선 2001년부터 여동생이나 남편의 누이 등 가족 관계에 있는 여성을 대리모로 한 대리출산이 5건 있었다고 밝혔다. 1990년 이후 할머니가 손자를 낳는 형태의 대리출산은 미국과 영국에서 각각 2건씩 보고된 바 있다.¹⁴⁾

4. 금전거래를 통한 부모 자식의 관계형성

김진영 제일병원 산부인과 의사는 “불임 부부의 행복 추구를 최대한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사들이 대리모 출산을 시술할 수 있지만 돈이 오가는 관계란 점이 문제”라며 “우리나라에선 현재 대리모 관련법이 없고, 처벌도 못하는 상황이다. 아무리 상업적 거래를 금지해도 돈은 오가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¹⁵⁾

아이를 원하는 부부와 대리모의 관계는 두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고용자-피고용자 관계와 비계약적 관계이다. 전자는 임신과 출산을 위해 신체적 정신적인 노동력을 제공한 대리모에게 의뢰인 부부가 금전적 보상

14) 한겨레신문, 2006년 10월 15일자.

15) “대리모 문제 법으로 풀리나”, 여성신문.

을 하는 경우이다. 후자는 대리모가 금전적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신체적 정신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는 대개 의뢰인 부부의 친척이나 친구가 대리모가 된다. 그러나 후자인 비계약적 관계의 경우에도 명시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수정란의 자궁이식과정, 임신기간 동안, 그리고 출산 과정에 따르게 되는 대리모의 고통과 수고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두 경우 다 금전적인 거래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된다는 점에는 별반 차이가 없으며, 금전적 거래를 통한 부모 자식 관계 형성은 당연히 윤리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¹⁶⁾

대리모 계약은 여타의 상품계약과 마찬가지로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상품으로 취급된다. 물론 대리모 자신도 여러 측면에서 희생자가 될 수 있지만, 최대 희생자는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 상품처럼 생산된 아이이다.

5. 대리모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

대부분의 대리모들은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자원하였으며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이익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할 위험이 높다. 이러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언론에 공개되기도 하였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경찰 압수자료와 대리모 희망 여성의 증언으로 본 대리모 계약은 ‘현대판 노예계약’이었다.

16) <대리모에 관한 분석 보고서> (자료번호:#364426) 2006. 9. 28. p. 5.
<http://www.reportworld.co.kr/data/365/F364426.html>

대리모 계약서 및 임신동의서 주요내용 17)

대리모는 출산 후 친권포기각서 작성. 공중 후 사례금 잔금 지급
임신 중 사망, 질병, 합병증은 전적으로 대리모가 책임 짐 .의뢰인은 도덕적 법률적 책임 없음
기형아 출산 시 의뢰인은 친권 거부 가능
대리모가 임신 중 음주, 흡연, 성관계 등을 할 때에는 곧바로 계약 파기 .의뢰인과 브로커에게 받은 금액의 2배 배상
의뢰인에게 경제적·가정적 문제가 발생해 아이 인수나 사례금 지급이 힘들 때는 임신 중절할 것. 거부하면 사례금 없음
의뢰인의 남편과는 인공수정을 위해 꼭 필요한 때를 제외하고는 일체 접촉 금지

위와 같은 계약은 대리모 여성을 몇 가지 생물학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다. 대리모 착취와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대리모 여성의 육체적 학대이다. 수정란의 자궁 내 이식과 성공적인 출산에 이르기까지는 수차례에 걸친 시도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대리모여성의 몸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는 한 의사는 여성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대리모의 문제는 어쩌면 윤리적인 문제보다 여성의 육체적 존엄성의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할 정도이다.¹⁸⁾

6. 빈곤층 및 약소국 여성 착취

대리모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오늘날 세계화된 시장경제 구조 속에서 대리모는 가난한 국가의 여성들을 착취하는 또 다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싼 가격에 ‘자궁’을 임대하기 위해 부유한 국가의 부부들이 비용도 싸고, 법적 제재도 적은 빈국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빈국의 여성들이 점점 부국의 대리모화 되어가고 있으

17) 서울신문, 2005년 2월 23일자, 1·4·5면 보도.

18) “인도 ‘대리모 외화벌이’”, 동아일보, 2006년 4월 21일자.

며 빈곤층 여성들에 대한 착취가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¹⁹⁾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체외 인공수정 및 대리모를 구하는 데 최소 2만 ~ 2만5000달러가 들지만, 인도인 여성을 사용하면 약 4분의 1정도의 경비밖에 들지 않는다. 실제로 사로즈 메리(32)라는 인도인 여성을 대리모로 계약한 한 미국인 부부는 메리에게 주어진 5000달러의 대가와 체외 인공수정, 수정란의 자궁이식, 인도 관광경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7200달러를 썼다. 메리가 받는 5000달러는 교사인 메리가 6년 넘게 월급을 모아야 되는 큰돈이다.²⁰⁾

인도 아난다의 한 산부인과 의사인 네이나 파텔 씨는 최근 대리모를 통해 8명의 아기들을 분만시켰는데, 그 중 3명은 미국, 2명은 영국, 나머지는 인도의 다른 지역으로 갈 아이들이다. 그리고 이 병원에는 20여명의 젊은 여성들이 대리모를 하겠다고 자원하여 대기 중이다. 파텔 씨와 전화나 웹 사이트로 불임 상담을 하려는 해외 고객들이 지금도 줄을 잇고 있다. 이는 세계화 된 시장경제 속에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대리모를 구하는 외국인들은 큰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인도 여성은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인도 여성들을 대리모로 선택하는 일이 매우 성행할 것으로 보인다.²¹⁾ 최근에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인 부부들을 위한 대리모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부부들이 조선족 여성들을 대리모로 계약하여 착취하는 경우들도 생겨나고 있다.

19) “인도 ‘대리모 외화벌이’”, 동아일보 .

20) 같은글

21) 같은글

7. 잉여배아 파괴

대리모출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대개 여러차례의 시도를 거치게 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배아들이 만들어지게 되며 자궁내 이식이 성공한 후에는 사용되지 않고 남겨진 잉여 배아들은 파괴되어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윤리적 문제가 있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체로 볼 경우에는 잉여배아의 파괴는 곧 살인행위가 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는 수정란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간주하며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가정권리헌장>에서 “인간의 생명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수정되는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²²⁾고 선언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은 인간 배아의 존엄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의 배아나 태아를 실험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가 된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출생한 아기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²³⁾

체외수정을 통해 태어난 최초의 아이는 Louise Brown이었다. 1978년 Steptoe와 Edwards가 나팔관이 막혀서 임신을 할 수 없었던 브라운 부인에게서 15개의 난자를 채취하여 호르몬과 영양액이 배합된 시험관에 넣고 약 5천개의 정자를 넣어 수정시킨 후 수정된 배아를 다시 산모에게 이식하여 약 9개월 뒤에 Louise Brown을 출생시켰다.²⁴⁾ 그러나 이 성공은 100여회의 착상시도가 실패한 후에 비로소 성공한 것이었다.²⁵⁾

22)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가정권리헌장> 4조, 1983년 11월 25일.

23)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63항, 1995년 3월 25일.

24) PC Steptoe and Robert G. Edwards "Birth after the Reimplantation of a Human Embryo," *Lancet* 6 1978. pp. 312, 366.

Louise Brown 이후로 체외수정은 불임 치료방법으로써 그 적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처음보다는 의료기술이 매우 발전하였지만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전히 수많은 실패를 거치게 되며 그에 따라 수많은 잉여 배아가 만들어지고 파괴되고 있다. 대리모출산의 경우에도 이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최준 외 3명의 의사들은 선천성 질결여증 환자를 위한 대리모 출산을 실시하면서 환자에게서 9개의 난자를 채취하여 수정시킨 후 그 중 3개의 배아를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쌍둥이를 출산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보고한바 있다.²⁶⁾ 그렇다면 나머지 6개의 배아는 어떻게 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심중팔구는 파괴되었을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은 이러한 잉여 배아의 생산과 사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이 수정란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죽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게다가 생산된 수정란의 수는 대개 여성의 자궁 속에 이식하기 위해 필요한 수보다 많으며, 이른바 ‘예비 수정란’이라고 부르는 이 수정란들은 폐기되거나 또는 실험에 사용됩니다. 이 실험이란 과학 또는 의학의 발전이라는 미명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릴 수 있는 단순한 ‘생물학적 재료’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²⁷⁾

25) John Jefferson Davis, *Evangelical Ethics*. (New Jersey: R&R, 1983), p. 72.

26) 최준·신종승·박원일·이진용, <선천성 질결여증 환자에서 대리모를 이용한 체외수정 임신 1예>, 『대한산부회지』 제47권 제11호, 2004, p.2265.

27) 회칙, <생명의 복음>, 14항; 참고. 에드워즈 같은 학자는 배아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실험용으로 쓰거나 파괴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체외수정을 통한 출산에 있어 장애가 있는 아이의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배아를 시험하는 것과 문제가 있는 배아를 폐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시험관에서 수정된 배아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생명체가 아니다”고 말한다. Robert G. Edwards and M. Puxon, "Parental Consent over Embryo," *Nature* 1984, p. 179.

잉여배아의 파괴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윤리적 문제이다.

8. 배아실험 및 조작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이기적인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배아에 인위적 조작과 실험이 가해질 위험이 있다.

체외수정을 통한 대리모 출산에 있어 정자선별 기술, 유전자 조작 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여 의료기술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칼이 수술칼로도 쓰일 수 있고 살인용 흉기로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질병치료의 목적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대리모출산을 통해 아이를 갖고자 하는 불임부부들의 특정한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우생학적 조작수단으로 잘못 사용될 수도 있다.

유아살해를 통한 성선택은 용납될 수 없는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일 것이다. 그렇다면 정자 선별 방법을 통한 성선택은 어떤가? 유아살해를 야기시키지는 않으나 여전히 특정 성을 가진 아이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

버지니아 패어팩스에 있는 유전자학 및 인공출산기술연구소(The Genetics & IVF Institute)는 여아가 될 X염색체를 가진 여성정자와 남아가 될 Y염색체를 가진 남성정자를 구별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정자에 형광물질을 염색하고 레이저 광선 아래로 지나게 하면 X염색체를 가진 여성 정자가 더 밝은 빛을 낸다는 점에 착안한 기술이었다. 이 기술을 통하여 여아를 원하는 부모에게는 91%, 남아를 원하는 부모들에게는 73%까지 원하는 아이를 출산시켜주는데 성공하였다.²⁸⁾

28) Agneta M. Sutton, "Sex Selection Via 'Sperm-Sorting': A Morally Acceptable Option?", The Center for Bioethics and Human Dignity, *Commentary*, November 4, 2002. http://www.cbhd.org/resources/reproductive/sutton_2002-11-04_print.html.

“더큰 근육 영양실조증(Duchene muscular dystrophy)”처럼 성염색체와 관련한 심각한 질병을 가진 배아가 만들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성을 선택하는 것과는 달리 특정 성의 아이(대부분의 경우 남아)를 원하는 사회적인 이유에 근거한 성 선택은 우생학적 차별(eugenic discrimination)을 야기시킬 것이다. 인위적으로 특정 성의 아이들을 선택하여 출산하게 되면, 이는 아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리고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 모두와 같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시도는 성불균형이라는 지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한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운명을 인위적으로 좌우하는 주권자가 될 위험을 안고 있다.²⁹⁾

체외인공수정으로 만들어진 배아를 자궁내에 착상시키기 전에 특정 성향을 가진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 배아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기술(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이 개발되었다. 출산 전 유전자 감식은 유전적 결함을 가진 태아를 출산 전에 낙태시키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기술은 자궁내에 착상시키기 전에 배아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질병을 발견해내는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우리의 필요와 기대에 부응하는 특정한 성향이나 재능을 가진 아이(맞춤식 아이)의 생산을 위해서 쓰일 수도 있다. 더 뛰어난 지적 능력, 운동선수로서의 능력, 음악적 재능 등과 같이 특정한 성향이나 재능을 가진 배아만을 골라서 자궁에 착상시키고 출산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³⁰⁾

위와 같이 태어날 아이 자신의 독립성과 존엄성과 자유가 최우선적 고

29) 같은 글.

30) Francis S. Collins, “Genetic Enhancements: Current and Future Prospects” Presentation at the December 13, 2002 meeting of the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Washington, D.C.
<http://www.bioethics.gov/transcripts/dec02/session5.html>

려사항이 아니고 특정한 성향이나 재능을 가진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배아에 우생학적 조작을 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이는 독립되고 자유로우며 자기 자신의 꿈과 희망을 성취해 가는 고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와 계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 로봇가 되는 것이며 항상 과중한 책임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또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특정 배아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최종 선택권을 하나님께서 아닌 부모가 행사하는 것 역시 중대한 문제이다.³¹⁾

V. 결론

위에서 대리모출산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대리모출산은 법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자기 자신의 아이를 낳고 싶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의 고통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 자신의 유전인자를 이어받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과연 비윤리적인 욕구인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욕구와 의료적인 방법을 통하여 아이를 갖는 것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불공평하며 오히려 비윤리적인 제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갖기 위해서 자연임신과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리모출산과 관련한 법규를 정할 경우에

31) Samuel Hensley, "Designer Babies: One Step Closer" The Center for Bioethics and Human Dignity, July 1, 2004.
http://www.cbhd.org/resources/reproductive/hensley_2004-07-01_print.html

는 관련한 대리모출산 자체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대리모계약의 내용에 대한 것까지도 법규로 제정하여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리모의 출산의 자유, 금전적 보상, 의료적 보장 등 대리모 여성의 인권보호, 출생한 아이의 복지 최우선 보장, 수태 중인 아이가 장애아일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법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다만 몸매 유지, 출산의 고통 회피 등과 같이 자녀출산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한 대리모 출산은 법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대리모 출산은 불임부부들을 위한 최후 수단으로써만 허용되어야 한다.

둘째, 아이 출산 후에 아이의 인도를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분쟁 등에 대한 법규정들이 분명하게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복잡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뢰인 부부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규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전통적인 혈연 및 가족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인척이 정자제공자가 되거나 대리모가 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넷째, 대리모에게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자궁 내 이식에서부터 출산까지 들게 되는 의료비와 출산 후까지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대리모가 겪게 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필수적인 것이다. 대리모에 대한 인권유린을 막기 위해서도 금전적 보상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치유목적을 위한 잉여배아 생산과 배아에 대한 과학적 실험은 법적으로 허용하되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생산과 실험은 금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생명공학, 의료기술, 유전자학과 관련한 실험과 연구를 일률적으로 금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실패와 시행착오 등으로 인해 잉여배아 파괴 등과 같은 피치 못할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실험과 연구는

계속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연구와 실험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장기복제가 가능해지고 체외수정과 자궁 내 착상이 가능해지며 암의 치유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최대한도로 해야 할 것이다.

자연적인 생식의 과정에서도 단 몇 개를 제외한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정자와 난자는 희생된다. 정자는 1초에 1천 마리(1년에 3백억 마리)라는 경이적인 숫자가 생산된다. 1회 사정 시에 정자는 2-3억 마리가 배출되어 이 중에 한 마리만의 정자만 난자와 만나 수정이 된다. 나머지는 질 내의 액체에 의해 죽게 된다. 난자는 출생 전 7개월부터 시작되어 출생 시 평생 사용할 난모세포가 약 2백만 개를 갖고 태어나서 시춘기가 되면 약 40만개로 줄어들고 한 달에 한 개씩 성숙한 난자를 배출한다. 실제 배란되는 숫자는 500-1,000 개정도 밖에 안 되며 이중에서 정자와 수정되어 생명으로 발전하는 것은 2-3 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을 위한 실험도구로 지금껏 해왔듯이 동물들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켜도 된다는 이러한 주장 역시 지극히 인간중심적인 발상이며 윤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간의 복지를 위한 실험이면 인간 스스로가 실험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어느정도의 실험은 허용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희생은 인간이 감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뢰부모의 취향에 따른 맞춤형 아이를 생산하기 위해 배아에 우생학적 실험을 시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아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부모의 욕구(특정 성이나 재능)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생학적 조작을 하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선물이 아니라 산업적 생산품으로 보며 인간의 인격적인 측면보다도 생물학적 특질을 더 우선

시 하는 잘못된 생각의 표출이다. 그러한 행위는 아이를 특정목적을 위한 상품이나 기계로 전락시키며 인간사회의 삶의 틀 자체를 와해시킬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한다.

여섯째, 많은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는 대리모출산 대신 입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의 유전인자를 이어받은 자식을 고집하지만 말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입양하여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보살펴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일거양득 이상의 보람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Collins, Francis S. "Genetic Enhancements: Current and Future Prospects" Presentation at the December 13, 2002 meeting of the President's Council on Bioethics, Washington, D.C.
<http://www.bioethics.gov/transcripts/dec02/session5.html>
- Davis, John Jefferson. *Evangelical Ethics*. New Jersey: R&R, 1983.
- Edwards, Robert G. and M. Puxon. "Parental Consent over Embryo," *Nature* 1984.
- Hensley, Samuel. "Designer Babies: One Step Closer," The Center for Bioethics and Human Dignity. *Commentary*. July 1, 2004.
http://www.cbhd.org/resources/reproductive/hensley_2004-07-01_print.html
- Steptoe, PC and Edwards, Robert G. "Birth after the Reimplantation of a Human Embryo," *Lancet* 6. 1978.
- Sutton, Agneta M. "Sex Selection Via 'Sperm-Sorting': A Morally Acceptable Option?" The Center for Bioethics and Human Dignity. *Commentary*. November 4, 2002.
http://www.cbhd.org/resources/reproductive/sutton_2002-11-04_print.html
- Uniform Status of Children of Assisted Conception Act(1988)

고정명, 신관철. 「대리모계약의 모성추정에 관한 고찰」. 『국민대 법학논총』. 제 10집. 1998.

요한 바오로 2세, 「가정권리현장」, 1983년 11월 25일.

_____, 「생명의 복음」, 1995년 3월 25일.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지침. 2001. 4. 19. 제정, 2001. 11. 15. 공포.

박동진. 「대리모계약에 의한 출산과 그 법적 문제」. 대한 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제3권 제1호 2002.

교황청 신앙교리성, 「생명의 선물」, 1987년 2월 22일. 이 훈령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의 사목 112호(1987년 7월) pp.119-144에 <인간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이라는 제목으로 번역 전문이 실려 있음.

최준 · 신중승 · 박원일 · 이진용. 「선천성 질결여증 환자에서 대리모를 이용한 체외 수정 임신 1예」. 『대한산부회지』 제 47권 제 1호, 2004.

통계청, 「2005년 출생통계 잠정결과」 2006. 5. 8.

머니투데이, 2006년 10월 16일자.

“인도 ‘대리모 외화벌이’”, 동아일보, 2006년 4월 2일자.

서울신문, 2005년 2월 23일자 1·4·5면

서울신문, 2005년 11월 14일자.

“대리모 문제 법으로 풀리나”, 여성신문 848호 게재, 2005년 10월 10일자 . 11:54
© 2006 OhmyNews

“美 게이커플 대리모 ‘성업’” 서울=연합뉴스, 2005년 5월 27일자 .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0505/h2005052720515022470.html>

한겨레신문, 2006년 10월 15일자.

<대리모에 관한 분석 보고서> (자료번호:#364426) 2006. 9. 28. p. 5.

<http://www.reportworld.co.kr/data/365/F364426.html>

<http://www.buddhism.or.kr/board/freeboard/board.asp>